

## 시·도별 신고처

구분	부서명	연락처
서울특별시	자연생태과	02-2133-2168
부산광역시	환경정책과	051-888-3634
대구광역시	환경정책과	053-803-4211
인천광역시	환경안전과	032-440-3716
대전광역시	기후환경정책과	042-270-5442
광주광역시	환경보전과	062-613-4141
울산광역시	환경정책과	052-229-3144
세종특별자치시	동물위생방역과	044-300-7615
경기도	기후환경정책과	031-8008-3513
강원특별자치도	자연생태과	033-249-2776
충청북도	환경정책과	043-220-4034
충청남도	탄소중립정책과	041-635-4415
전라북도	기후환경정책과	063-280-4533
전라남도	환경정책과	061-286-7032
경상북도	환경정책과	054-880-3522
경상남도	환경정책과	055-211-6636
제주특별자치도	환경정책과	064-710-6073

**2023년 12월 14일부터**  
**동물원·수족관이 아닌**  
**전시시설(야생동물카페 등)에서**  
**살아있는 야생동물**  
**전시가 금지됩니다!**

※ 기존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 
 유예기간(2027년 12월 13일까지)을 부여할 예정이므로  
 시·도에 현재 시설 현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11.20.

## 2023년 12월 14일 부터

「야생생물법」개정('22.12.13. 공포)으로 **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·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!**

### 전시가 금지되는 동물과 가능한 동물은 무엇인가요?

전시 금지 동물	전시 가능 동물
<p><b>야생동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포유류 모든 종(라쿤, 고슴도치, 다람쥐, 친칠라 등 모든 야생포유류 전시금지)</li> <li>조류 중 전시가능 종을 제외한 모든 종</li> <li>파충류 중 전시가능 종을 제외한 모든 종 (코브라과·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전시금지)</li> <li>전갈목 중 독이 있는 종 (코브라과·살모사과 정도의 독을 지닌 종 전시금지)</li> </ul>	<p><b>야생동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류 중 앵무목·뿔과·되새과·납부리새과</li> <li>파충류 중 거북목·뱀목 (코브라과·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제외)</li> <li>절지동물문 중 독성이 없거나 약한 종 (타란툴라 등 포함)</li> <li>수산 및 해양동물</li> </ul> <p><b>야생동물이 아닌 동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려동물(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, 햄스터)</li> <li>가축(소, 말, 면양, 염소, 돼지, 사슴, 닭, 오리, 거위, 칠면조, 메추리, 타조, 꿩, 기러기, 노새, 당나귀, 토끼, 개, 꿀벌, 이외 오소리 등 농식품부 고시 동물)</li> </ul>

### 동물 종류와 관계없이 전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?

- 동물원 또는 수족관
- 연구·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생물자원관, 야생동물 구조센터, 야생동물 보호시설, 서식지외 보전기관, 과학관, 국립수목원에서 전시하는 경우
- 야생동물 판매, 수입, 생산 등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\*(’25.12.14.부터 시행)  
\* 2025.12.14.까지는 야생동물 전시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### 유예를 할 수 있나요?

기존 전시자\*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(’23.12.13.까지) 전시시설 소재지,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등 현황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

\* 「야생생물법」공포 당시(’22.12.13.)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자만 해당됩니다.

## 야생동물 전시자는

**2023년 12월 13일(법 시행 전)까지 업체명, 소재지(주소), 대표자 이름,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시·도에 신고해야 합니다!**

### 신고 대상과 방법이 궁금합니다!

	전시시설	판매시설
<b>대상 시설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야생동물카페 등 전시시설</li> <li>야생동물 이동전시업</li> <li>지자체·개인 등이 운영하는 공원 등 시설에 포함된 소규모 전시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야생동물샵 등 판매시설</li> </ul> <p>※ '25.12.13.이후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득할 경우 제한없이 전시 가능, 현재는 '애완동물 도소매업'으로 등록된 경우 동물원에서 제외</p>
<b>신고 방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서*에 현재 보유 중인 전시금지 종, 개체수, 소재지, 대표자 등을 작성하여 2023.12.13.까지 관할 시·도에 제출</li> <li>*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별지1 서식</li> </ul>	
<b>유의 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전시하는 경우 동물원에 해당되므로 신고 시 유의</li> <li>이동전시업은 주된 소재지를 명시</li> <li>「야생생물법」공포 당시(’22.12.13.)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자만 신고 가능, 신고 시점에 보유중인 전시금지 종을 신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전시하더라도 '애완동물 도소매업' 등록 시설은 동물원에서 제외</li> <li>「야생생물법」공포 당시(’22.12.13.)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자가 아니더라도 우선 신고 수리, 신고 시점에 보유중인 전시금지 종을 신고</li> </ul>

### 2023년 12월 14일 법 시행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 되나요?

	전시시설	판매시설
<b>신규영업 및 미신고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시금지 동물의 신규 전시 금지 (보유만 가능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5.12.14. 이후 야생동물 판매업허가를 득할 때까지 전시금지 동물의 신규 전시 금지(보유·판매만 가능)</li> </ul>
<b>신고한 자 (기존시설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시금지 동물에게 아래 행위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올라타기</li> <li>관람객이 만지게 하는 행위</li> <li>관람객이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</li> </ol> </li> <li>전시가능 동물은 종전대로 전시</li> <li>신고서 유의사항 제3호 준수 필요</li> <li>'27.12.14.부터는 전시금지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시금지 동물에게 아래 행위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올라타기</li> <li>관람객이 만지게 하는 행위</li> <li>관람객이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</li> </ol> </li> <li>전시가능 동물은 종전대로 전시</li> <li>신고서 유의사항 제4호 준수 필요</li> <li>'25.12.14. 이후 야생동물 영업허가 필요 (추후 세부기준 규정)</li> </ul>